

# 그린라운드의 開幕과 그 對應方案

韓 三 寅\*

## 目 次

I. 머릿말	IV. 그린라운드의 對應方案
II. 그린라운드의 背景	V. 맺는말
III. 그린라운드의 開幕과 그 波及效果	

## I. 머릿말

인간은 환경오염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sup>1)</sup>, 세계는 핵전쟁에 의한 破滅은 피할 수 있었다 해도 인류는 환경오염에 의한 멸망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sup>2)</sup>.

애초에 자연은 정상적인 순환관계(Relation of Circulation)를 통하여 그들이 오염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막아 왔다. 그러던 것이, 인간이 燃化物質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가스의 배출은 대기의 정상성분을 혼탁·오염시켰다. 그러나, 그 연료가 목재였고 규모가 소규모적이었기 때문에 自然의 自淨作用(Natural Purification)에 의하여 자연속으로 환원될 수 있었으므로, 그것은 공해<sup>3)</sup>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산업혁명의 발흥으로써 技術革新(Innovation)이 이루어 짐에 따라 종전의 가내공업형태는 새롭게 변모·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즉,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 濟州大學校 法學科 副教授(民法·環境法, 法學博士), 韓國家族法學會理事, 韓國不動產法學會理事, 韓國比較私法學會理事

1) 母乳에서까지 중금속이 검출되고, 토양마저 오염되고 있는 사실에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은 후까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韓三寅, 「公害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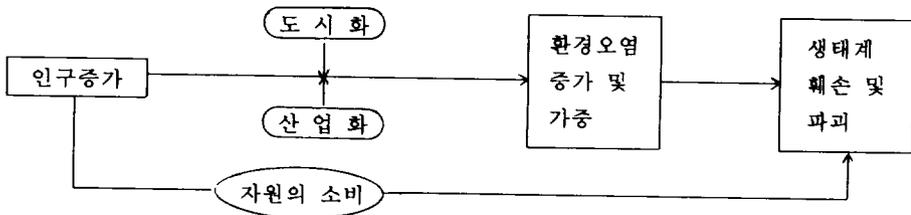
2) 하나 밖에 없는 지구(only one the earth)라는 UN 人間環境會議(스웨덴의 스톡홀름, 1972)의 슬로건이었다.

3) 흔히 일컫는 공해현상에 대하여 東京(1970. 3.)에서 열렸던 국제사회과학 협의회의 공해심포지움에서 공인된 용어는 환경파괴(Environmental Disruption)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의 환경보전법에서 부터(1990년의 환경정책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는 公害 대신에 環境汚染의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② 그린리운드의 開幕과 그 對應方案

더불어 기업들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산업이 점차로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현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좁은 지역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生活居所를 갖게 되면서 이들을 통행시키는 대중교통기관이 증가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연쇄적 증가반응은 諸手段의 수요와 공급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에 따른 공업지대와 교통기관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으로써 환경오염은 자연의 淨化能力을 훨씬 초월하게 되었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자연의 순환과정에 누적됨에 따라서 인간의 財産·健康·生命 등 이른바 인간의 생활 환경은 위태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環境汚染(Environmental Pollution)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sup>4)</sup>하게 된 것이다.

(표1) 환경오염의 원인



그리하여, 19세기 이래 세계각처에서 적지않은 인명피해와 함께 발생한 環境汚染事件들<sup>5)</sup>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증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인간이 만든 公害要素가 지구상의 인간을 絶滅시키게 될 것”이라는 침묵의 봄(Silent Spring)<sup>6)</sup>이 발표되자 각국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生態學的 危滅(Ecological Crisis)<sup>7)</sup>의 관리에 부심하는 한편 環境問題를 人類生存條件의 차원에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sup>8)</sup>. 특히 1995년 1월 1일 世界貿易機構(WTO)의 정식 出帆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地球環境保護를 위한 무역규제에 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세계의 경제질서를 새롭게 편성시켜 놓았다.

4)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하여는 권숙표, “환경오염의 현황과 대책”, 「公害問題와 裁判」, 법원행정처, 1978, pp. 257-267 참조.

5) Pindle, *The Disaster Potential of Community Air Pollution*,

The Air We Breathe(ods., by Faber and Willson, 1969), pp.177-180.

6) Rachel Carson, *Silent Spring*, New York, 1962.

7) 김변용, “생태학적 정치이론 서설”, 「社會科學論集」 제10집,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79, pp. 159-162.

8)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1987년 브룬트랜드(Brundtland) 위원회가 UN에 제출·채택된 “우리의 共同未來(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보고서(모든 국가가 환경파괴에 있어서 채택할 중요한 환경관리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오늘날 環境과 開發에 관한 基本文書임)를 들 수 있다. 그 개념(내용)을 보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현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성장은 기술과 사회조직의 향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국가는 개발환경요소를 고려하는 예방적 조치를 하고 또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本稿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到來背景과 그 對應策 등을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그린라운드의 背景

오늘날 지구환경문제<sup>9)</sup>는 환경문제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 관계에 있어서 유효한 貿易規制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環境基準 (Standards of Environment Quality)<sup>10)</sup>의 적용이나 炭素稅의 부과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미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회원국들이 환경보존과 自然資源保存을 위한 공동목표로서 GATT규약의 개정이나 GATT이사회의 결의 형태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무역규제조치를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이미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1993년 10월에 이산화탄소(CO<sub>2</sub>)<sup>11)</sup>의 발생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氣候變化實踐計劃(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를 환경에 연결시키는 과제를 시작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하루빨리 우리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계획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라고 한 클린턴 美大統領의 연설은 세계가 그린라운드를 향하여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9) 인간의 삶은 모두 지구의 기후·대기·육지·해양 그리고 연근해를 합한 생명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생명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바로 지구환경문제이다. 그 主要한 것으로서 越境大氣汚染(酸性비)·오존層 파괴·捕鯨·아프리카產 코끼리 상아의 무역거래·有害廢棄物의 國家間 去來·地球溫暖化·生物多樣性 消滅·熱帶林의 破壞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헌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Jessica Mathews(ed.), Preserving the Global Environment(1991, Norton, New York);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ne Earth, One Future(1990,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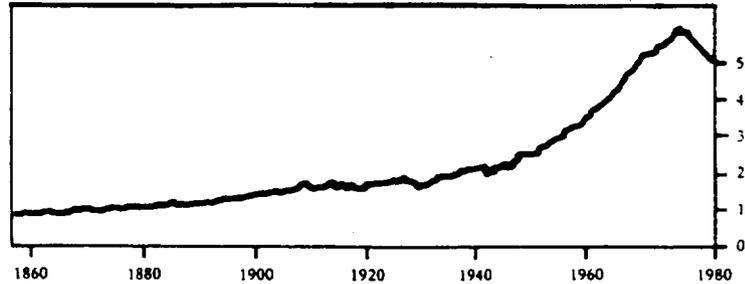
10) 환경기준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상의 조건을 數值化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環境政策基本法 10조 1항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규제의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基準設定(standard setting)의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基準設定의 詳細에 대하여는 Stephen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1982, Ch. 5. p. 96이하를 참조할 것.

11) 화석연료연소와 식물소멸로 인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275ppm이었던 것이 1988년에 350ppm으로 증가되었다. 이 수치는 과거 135만년의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R. E. Dickinson and R. J. Cicerone, “Future Global Warming from Atmospheric Trace Gases”, Nature 319(1986), pp. 109-115.

그런데, 기후학자들은 대기중에 있는 이 가스들이 집적되면 서서히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溫室效果 또는 地球溫暖化 현상이다.

④ 그린라운드의 開幕과 그 對應方案

(표2)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세계탄소배출량, 1960-1980년



출처: James J. Mackenzie *Breathing Easier: Taking Action on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Energy Insecurity*(Washington, D. C. : World Resources Institute, 1989), Fig. 3, p.5.

이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自國의 産業生産에 있어서 환경비용의 전가와 기업의 경쟁력확보<sup>12)</sup>를 위해 또는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지구환경의 保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sup>13)</sup>. 이것이 바로 각종의 國際環境協約(표3참조)들이고,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의 강제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제재의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린라운드의 開幕은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환경관련 국제협약 현황

구 분		채택 · 발효일		가입국 수 및 한국가입여부
빈협약		85. 3. 22 채택,	88. 9. 22 발효	122개국, 가입(92. 5)
	원협정서	87. 9. 16 채택,	89. 1. 1 발효	128개국, 가입(92. 5)
몬트리얼 협정서	제1차 개정협정서	90. 6. 29 채택,	92. 8. 10 발효	68개국, 가입(93. 3)
	제2차 개정협정서	92. 11. 25 채택,	94. 1. 1 발효	30개국, 未加入
기후변화협약		92. 6. 채택,	93. 3. 21 발효	50개국, 가입(93. 12)
바젤협약		89. 3. 24 채택,	92. 5. 5 발효	49개국, 未加入
생물다양성협약		92. 6. 채택,	93. 12. 30 발효	31개국, 상반기 가입예정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		73. 3. 채택,	75. 7. 발효	120개국, 가입(93. 10)
런던협약(LC)		72. 11. 13 채택,	75. 8. 20 발효	71개국, 가입 수속중

출처: 이효준,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 「多寶」,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1994. 3, p. 8.

12) 환경관리에 대해 新古典派經濟學의 가지고 있는 전제를 분석한 것으로는 Daniel A. Underwood and Paul G. King.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Policy", *Ecological Economics* 1(1989), pp. 317-322를 참조할 것.

13) 오석락, "그린라운드 대책과 환경법제의 정비", 「제주대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강의교재」, 1994, pp.1-2 참조.

### Ⅲ. 그린라운드의 開幕과 그 波及效果

#### 1. 그린라운드의 意義

“그린라운드”라는 새로운 물결은 날로 심각해지는 地球의 環境保護를 위해 국제무역을 그 실천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간의 무역협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을 보인지 오래다.

“그린라운드”라는 말은 환경보호를 의미하는 Green이란 단어에 雙方間이 아닌 多者間의 協商을 의미하는 Round라는 말을 붙여 만든 것이다. 원래 이 용어는 1991년 10월 美上院 貿易小委員會委員長인 막스 보커스議員이 워싱턴에 있는 國際經濟研究所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감안되어야 공평하며, 이를 위해 相計關稅를 부과하는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多者間 國際貿易秩序, 이른바 그린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하고 있다.

그린라운드의 취지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간에는 關稅附課나 수입규제를 통해 차등을 두어야만 각국의 환경보호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일반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A회사의 제품과 썩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B회사의 제품을 비교할 때 A회사제품이 1만원이고 B회사 제품이 1만5천원이라면 A회사 제품에 최소한 5천원 이상을 關稅나 罰金형태로 물려야 公正한 競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어야만 모두가 썩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투자를 더 해가며 環境保護製品을 만들겠느냐는 것이다.

보커스議員의 주장은 그 당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각종 환경협약이 제대로 강제조항을 지니지 못했고 따라서 遵守者만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계 環境保護論者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開發途上國家들의 추격으로 세계시장에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에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선진국들은 高賃金 때문에 제품의 생산원가에서부터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계속 밀리고 유일한 강점인 기술과 품질마저도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해 왔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선진국들의 석탄·석유사용, 산림훼손, 공해배출 때문에 오늘날의 地球環境汚染이 야기된 것인데 이제와서 그 책임을 개발도상국가들이 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 그린라운드의 展開過程

그동안 그린라운드의 전개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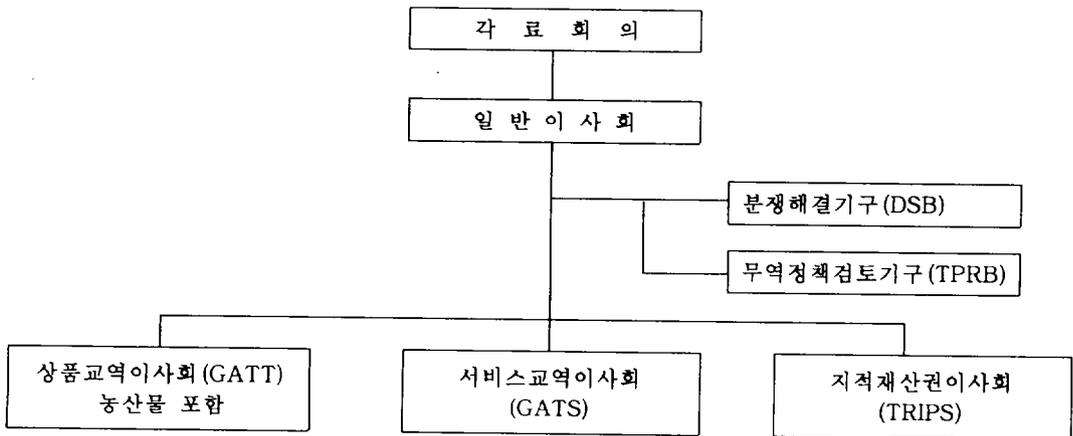
⑥ 그린라운드의 開幕과 그 對應方案

1992년 UN의 주관 아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制限에 합의한 “리우환경선언”이 나오게 됐고 이로써 그린라운드가 본격 태동하기 위한 명분은 생겼다. 더 나아가, 미국의 클린턴大統領은 1993년 7월 “앞으로는 國際貿易에서 환경보호 뿐 아니라 독점금지, 기술정책, 투자, 고용 등까지 함께 감안해서 새로운 국제교역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른바 클린턴Round의 추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이미 1991년 4월에 국제상공회의소(ICC)로 하여금 國際標準化機構(ISO)에 “각국의 환경 규격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규제의 흐름은 UN環境計劃(UNEP)<sup>14)</sup> 주관 아래 체결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별국가별 環境關聯法案 등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1972년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는 UN환경선언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매뚜기피해방지협약”에서 「核 관련 통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52개가 채택돼 있다. 이중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8개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sup>15)</sup>

어떻든 그린라운드가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은 국제적인 무역기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장아래 각국들이 協商을 벌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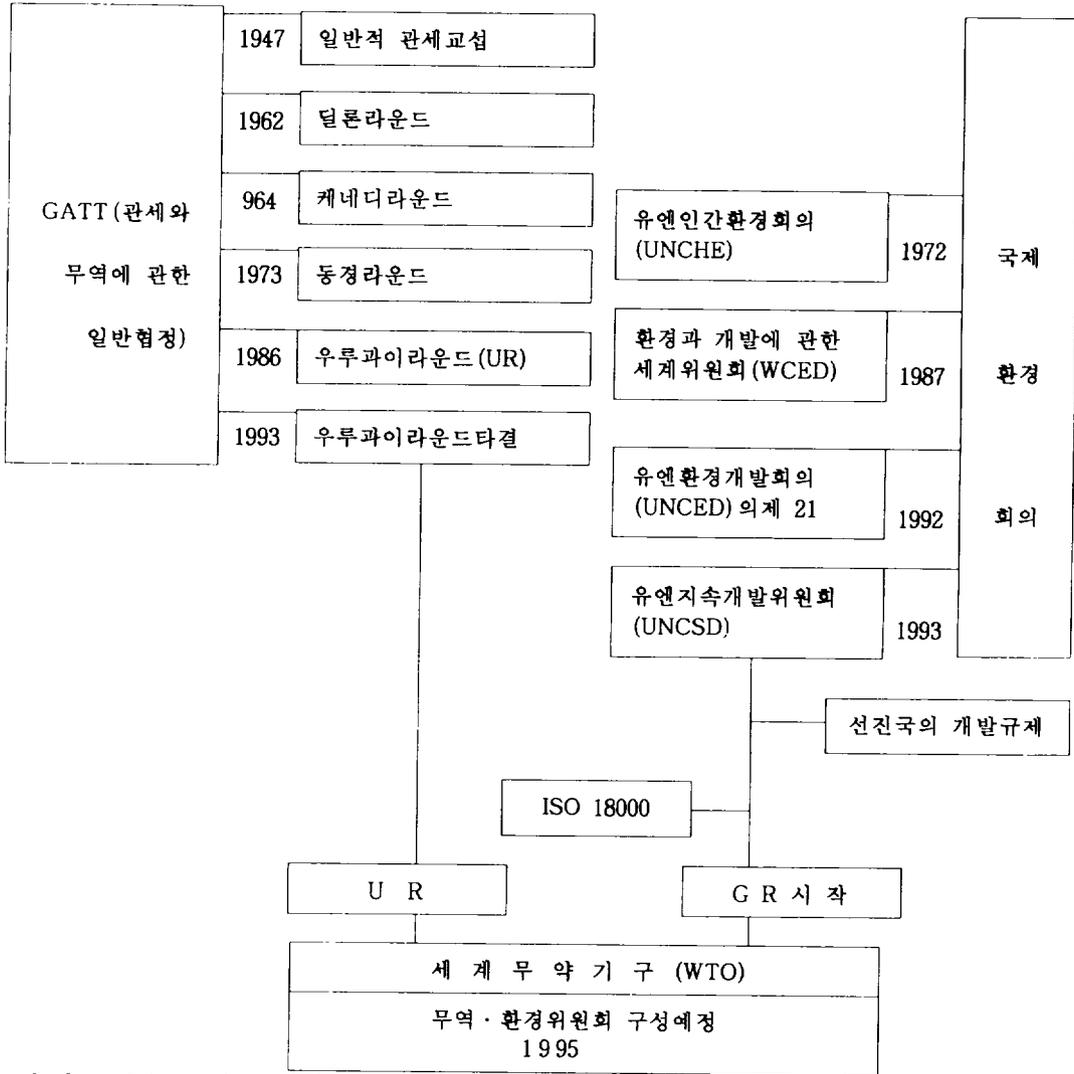
(표4) WTO의 구조



14) UNEP(유엔환경계획)는 국제교섭을 개시하고 이를 운영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 締結한 환경에 관한 중요한 조약들의 대부분은 UNEP가 주최한 교섭의 결과들이다. 그 주요한 것을 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1973년)”, “폐기물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조약(1972년)”, “오존層 보호를 위한 빈 조약(1985년)”, 오존層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협정서(1987년)”, “유해 폐기물의 국경 이동 및 그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조약(1989년)” 등을 들 수 있다.

15) 이효준, 전제논문, pp. 8-11참조.

(표 5) 그린라운드의 형성과 전개과정



출처 : 이해찬 역, 「세계환경정치」, 1994, p. 13.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린라운드가 현재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또 준비단계에 불과하지만 世界貿易機構(WTO) 체제<sup>16)</sup>가 확실히 정착되고 동시에 199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 18000시리즈(環境認證制度)가 완료되면 그린라운드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은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體制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16) 세계 12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등 貿易4強國이 모두 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한편, 1994년 12월 31일 현재 UR무역자유화협정비준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85개국이다. 이제 WTO는 그 기능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 각료회의(최고의결기관)를 2년마다 개최하게 된다.

### 3. 그 波及效果

그린라운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못지 않게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규제가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수출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은 일반적인 貿易規制나 國際競爭力의 弱화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단순히 수출의 감소로 그치게 되지만, 국제적인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예 수출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排氣가스 規制基準<sup>17)</sup>을 충족치 못하면 그 市場進出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미국은 그린라운드의 태동과 함께 “슈퍼301조의 그린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라운드 진행될 경우 자국의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슈퍼301조를 적용하거나 環境投資部門만큼 相計關稅를 물린다는 방침인데 납, 아연, 납시추의 수출이 여기에 해당될 것<sup>18)</sup>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나라들의 수출여건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요인들이 제거되는 好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린라운드를 통해 국내 環境質의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 요소일 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문별로는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가에 의한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國際分業構造의 형태나 技術水準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産業이나 業種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sup>19)</sup>.

17) 1990년 미국의 大氣淨化法(The Clean Air Act)의 개정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18) 오석락, 전제논문, p. 4.

19) 김준한, “그린라운드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多寶」,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1994. 3. p. 14 참조.

## IV. 그린라운드의 對應方案

그린라운드의 개막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린라운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講究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여기에서는 그 대응방안의 概要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汚染者에게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内部化 措置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外部效果로만 다룰 수 없다는 環境問題에 대한 認識의 大轉換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경제 운용도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持續可能한 開發(ESSD)”의 개념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경제의 지표를 생산측면만 반영하고 있는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오염 등을 差減한 綠色 국민총생산(Green GNP)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企業戰略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사고를 버리고 환경에 투자되는 비용을 원가의 일부로 받아들여 環境親和的인 高附加價値 商品을 생산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GNP對比 26%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는 국제협상에서 언제나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內需市場의 확대가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 諸계층간의 소득균형과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內需市場 확보가 요망된다. 또한, 國防費를 環境設費로 전환하는 냉전구조의 완전한 청산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교육지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하여 大企業은 自救策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고 자금과 시설인력이 보강될 수 있으나, 中小企業의 경우는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책실현을 위한 자금·기술·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ISO 18000과 같은 국제표준인증체도가 실시되어 생산공정 및 경영에까지 環境親和的인 조건이 요구될 경우 종합수출상사에 下請化된 중소기업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 된다.

끝으로, 산업계·학계·정부 및 환경과 무역분야의 전문가·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환경운동을 하는 非政府組織)로서의 민간환경운동조

직)·소비자·정치 등의 각분야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그린라운드 對策 汎國民機構」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국제협상과정의 정보가 공유되고 이에 대응하는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시로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sup>20)</sup>.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을 통해 얻은 敎訓을 살려 적절한 최상의 협상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 V. 맺는말

사회구조가 도시화·공업화(산업화)에 치달고, 계층구조가 중산층화할수록 環境汚染(Environmental Pollution)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지 오래이다. 특히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環境開發會議(UNCED)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sup>21)</sup>이 채택되어 졌고, 1995년 1월 1일 世界貿易機構(WTO)의 정식출범으로 그린라운드의 開幕은 거역할 수 없는 世界貿易의 潮流가 되어 버렸다.

이제 環境保全은 국내외적 측면에서 “삶의 質(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린라운드를 위한 最適의 戰略을 수립하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기업·국가 모두가 그린라운드의 문제를 生存戰略의 차원에서 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國際競爭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本稿를 맺는다.

20) 이해찬 역, 전제서, pp. 17-20 참조.

21) 이 선언의 原則 1은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Human beings are at the centre of concer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y are entitled to a healthy and productive life in harmony with nature)”고 선언하고 있고, 原則 4는 “持續 可能한 開發을 성취하기 위하여 環境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며 이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it)”고 천명하고 있다.